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연 병 호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2011. 12. 30.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2011.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도청소재지 시지역 취득부동산
(현행) 취득세 세율 10/1000 경감
(개정) 취득세 25/100 경감
 - 지역자원시설세
(현행) 50/100 경감
(개정) 삭제
 -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액(안 제3조)
 - 감면기간 연장 : 2012. 12. 31까지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2011. 12. 31 → 2012. 12. 31)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안 제4조)
 - 동거가족 범위 조정
 - (현행) 직계존속·직계비속
 - (개정)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안 제5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안 제6조)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취득세 경감)(안 제7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취득세 면제)(안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 (현행) 7년 취득세 면제 그 다음 3년 50/100 경감
 - (개정) 15년간 취득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이전에 취득한 재산중 조세감면 결정(기획재정부)을 받은날로부터 취득한 재산
 - (현행) 무기한 취득세 면제
 - (개정) 15년간 취득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이 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재산
 - (현행) 7년 취득세 면제 그 다음 3년 50/100 경감
 - (개정) 10년간 취득세 50/100 경감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날로부터 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재산
 - (현행) 무기한 취득세 면제
 - (개정) 10년간 취득세 50/100 경감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안 제9조)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0조)
 - (현행) 취득세 면제

(개정) 취득세 50/100 경감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 11조)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내용 추가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취득세 경감) (안 제12조)

※ 현행조례에서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을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는 4개기관을 제외한
2개 기관을 조례로 감면

4. 검토의견

금번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감면된 조항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변경하고,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감면하는 4개 기관을 제외한 2개 기관만을 조례로 감면하는 것 등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감면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세감면조례는 일몰 조례로써 매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조례임에 따라 매년 12월 개정하였으나, 금번에는 1월에 개정함으로써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된 사유와 소급적용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붙 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